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11. 1. 2005노3002]

【전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들

【검 사】이상진외 1인

【변 호 인】 변호사 한봉조

【원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5. 9. 8. 선고 2005고단280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 2를 각 징역 8월, 피고인 3, 4를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3일을 피고인 1에 대한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에 대한 2004. 11. 초순 영업비밀사용으로 인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유】

- 1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피고인 1, 2의 공통된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ETUND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적법한 보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ETUND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ETUND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이른바 GNU GPL에 의거하여 개작한 것으로서 GPL에 따라 ETUND의 자유로운 사용과 개발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ETUND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TUND의 사용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하였으므로 VTUND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작한 ETUND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TUND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영업비밀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다) 셋째,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10월,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그밖에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VTUND라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ETUND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 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비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행파일을 장비에 장착하여 장비를 테스트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 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회선이용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안상품가격표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4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하여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제3의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한 변경 전의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4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피고인 1, 2의 공통된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ETUND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적법한 보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ETUND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ETUND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이른바 GNU GPL에 의거하여 개작한 것으로서 GPL에 따라 ETUND의 자유로운 사용과 개발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ETUND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TUND의 사용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하였으므로 VTUND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작한 ETUND에 대하여도 정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TUND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영업비밀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다) 셋째,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10월,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그밖에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VTUND라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ETUND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 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비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행파일을 장비에 장착하여 장비를 테스트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 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첫째,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회선이용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안상품가격표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

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4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 하여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제3의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나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한 변경 전의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4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 1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피고인 1, 2의 공통된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ETUND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적법한 보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ETUND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ETUND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이른바 GNU GPL에 의거하여 개작한 것으로서 GPL에 따라 ETUND의 자유로운 사용과 개발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ETUND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 소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TUND의 사용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하였으므로 VTUND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작한 ETUND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TUND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영업비밀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다) 셋째,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10월,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그밖에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VTUND라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ETUND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 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비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행파일을 장비에 장착하여 장비를 테스트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 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제처 6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첫째,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회선이용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안상품가격표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4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제3의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나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한 변경 전의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4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피고인 1, 2의 공통된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ETUND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적법한 보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ETUND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법제처 7 국가법령정보센터

- (나) 둘째, ETUND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이른바 GNU GPL에 의거하여 개작한 것으로서 GPL에 따라 ETUND의 자유로운 사용과 개발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ETUND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TUND의 사용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하였으므로 VTUND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작한 ETUND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TUND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영업비밀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다) 셋째,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10월,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그밖에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VTUND라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ETUND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 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비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행파일을 장비에 장착하여 장비를 테스트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 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법제처 8 국가법령정보센터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회선이용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안상품가격표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4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제3의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한 변경 전의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4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 가.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피고인 1, 2의 공통된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제처 9 국가법령정보센터

- (가) 첫째, ETUND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적법한 보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ETUND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ETUND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이른바 GNU GPL에 의거하여 개작한 것으로서 GPL에 따라 ETUND의 자유로운 사용과 개발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ETUND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TUND의 사용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하였으므로 VTUND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작한 ETUND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TUND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영업비밀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다) 셋째,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10월,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그밖에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VTUND라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ETUND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 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비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행파일을 장비에 장착하여 장비를 테스트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 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법제처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회선이용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안상품가격표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4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제3의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 나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한 변경 전의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4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제처 11 국가법령정보센터

- (1) 피고인 1, 2의 공통된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ETUND는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개발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1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개발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제공한 것이므로,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적법한 보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ETUND가 공소외 1 주식회사가 개발하여 정당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ETUND는 공개된 소프트웨어인 VTUND를 이른바 GNU GPL에 의거하여 개작한 것으로서 GPL에 따라 ETUND의 자유로운 사용과 개발을 일반인에게 허용하고 소스코드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ETUND는 비공지성이 결여되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영업비밀보호법'이라고 한다) 소정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ETUND의 사용자인 공소외 1 주식회사는 ETUND의 공개를 거부함으로써 GPL을 위반하였으므로 VTUND에 대한 사용권한이 없고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개작한 ETUND에 대하여도 정당한 권리자의 지위에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ETUND를 공소외 1 주식회사가 정당하게 보유하는 영업비밀로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다) 셋째, 원심이 피고인 1, 2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피고인 1 : 징역 10월, 피고인 2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그밖에 피고인 2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가) 첫째, 피고인 2는 상피고인 1로부터 제공받은 소프트웨어가 VTUND라는 공개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개작한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영업비밀인 ETUND라는 점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 2에게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2가 상피고인 1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 기재 각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나) 둘째, 피고인 2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장비테스트를 하기 위하여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일반인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실행파일을 장비에 장착하여 장비를 테스트한 행위는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 2의 이러한 행위가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영업비밀을 사용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위법을 범하였다.
- 나. 피고인 3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법제처 12 국가법령정보센터

- (1) 첫째, 피고인 3이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퇴사를 하면서 가지고 나온 VPN 고객정보, 제안서, 업체별 VPN 서비스 가격비교표, 영업실적, 영업현황 등의 자료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3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3이 원심 판시 제2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3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피고인 4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 (1) 첫째, 피고인 4가 공소외 1 주식회사에서 가지고 나온 회선이용계약서,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제안서, 고객업종별리스트, 견적서, 공소외 1 주식회사 보안상품가격표는 영업비밀보호법 상의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 주식회사가 보유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피고인 4에게 이러한 자료를 이용하여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공소외 1 주식회사에 손해를 가할 목적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 4가 원심 판시 제3의 나 범행을 저질렀다고 잘못 인정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 (2) 둘째, 원심이 피고인 4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 2.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 2항에 관한 부분) 및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3의나항에 관한 부분)에 관하여 각 공소사실을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당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변경 전의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 1, 2, 3에 대한 각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고, 또한 변경 전의 피고인 4에 대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공소사실 및 이와 형법 제37조 전단의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피고인 4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4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 4에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 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법제처 13 국가법령정보센터

법제처 14 국가법령정보센터